한국경호경비학회 – 제57호(2018): 253–275

투고일 2018. 11. 09 심사일 2018. 11. 29 게재확정일 2018. 12. 03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김 항 곤·이 창 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김 항 곤*·이 창 무**

〈요 약〉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산업 기술 유출, 산업 보안, 경제 스파이법, 영업 비밀, 산업기술보호법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처벌 법규
Ⅳ.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분석
Ⅴ. 결 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첨단 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생존권 확보 전략 차원에서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력확보의 핵심 요소인 타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정부기관, 민간업체 공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산업스파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10. 31.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최근 2년간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례가 총 40건이며, 그 중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이 7건 포함되었고, 중국유출이 70%에 해당한다”[1]고 밝히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의 심각성을 밝힌 바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 피해업체 예상 피해액이 연평균 50조원으로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개

1) 조선일보 (2018, 11, 1). 국정원, 첨단기술 유출 2년간 40건 적발... 70%가 중국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1/2018110100282.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타국의 첨단기술 입수노력과는 별도로 자국의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민간기업이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1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였으나,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2006. 10. 27. 법률 제 8062호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간 중복되거나 처벌 상 형평성 문제, 수사기관의 소극적 법적용, 기소 기관의 비전문성, 법관의 보수적 판결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경찰 그리고 검찰이 각각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호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효율적인 예방과 사후 처벌이 되지 않고 있어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법체계의 문제점 개선, 수사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등 개선노력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기업을 경제적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기밀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수준으로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것이 최근 각국의 추세이다.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스파이법」(1996),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개정[2]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간첩죄 조항에 신설하거나, 현행 형법 규정의 간첩죄를 적용하여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는 불가피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2014년 3월 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2016년 9월 6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죄'의 처벌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한 현행 형법을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간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현황을 적시하여 그 심각성을 살펴보며, 산업기술 유출행위 예방을 통해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 중 가장 처벌정도가 강한 형법상 간첩죄로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에 맞춰 국회의 형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할 사안인지 아니면 경제 관련 특별법으로의 개정이 적절한 것인지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보며, 세계 각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분석해 적절성을 검토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법제와 해외 사례 등의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법규간 비교분석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현행 법령과 개정 법안 내용을 살펴보았고, 선행연구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언론 등에 나타난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실태

산업기밀보호센터(2015)에 따르면 연도별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 실적은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건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기술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산업스파이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실적을 2012년 이후 매년 100여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40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하였다. 그 중 중소기업 피해사건이 91%(128건), 해외유출사건이 9%(13건)였으며, 유출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고 기타 미국·일본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3)]

3) 경찰청(2018), 경찰백서.

〈표 1〉 산업기술 유출사범 연도별 검거 현황

년도	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검거 (건)	983	16	25	72	46	40	84	140	97	111	98	114	140

* 출처: 경찰청자료 재구성

경찰청이 기록·관리하고 있는 공식통계 중 하나인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검거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10년 경찰에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발대하는 등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4] 또한 경찰청에서는 2018. 4. 1. ~ 9. 30.간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총 67건 178명을 검거하여 그 중 7명을 구속하여 기술유출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 및 국부유출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획수사 결과 내부 임직원에 의한 이직·창업 또는 금전이득 목적의 중소기업 대상 USB 등 저장매체 이용 반출로 주로 중국·미국·일본 등 기술경쟁국으로의 유출로 요약된다고 하였다.

2) 범죄예방의 억제이론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산기법 등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기존 법의 형량이 강화되고 심지어 형법상 간첩죄 신설이나 적용까지 검토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처벌의 엄중성을 높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법의 제정과 기존 법의 형량 강화, 적용대상의 확대 등과 같은 법제적 변화를 나타나게 된 상황은 범죄원인과 대책 이론 중 '억제이론'에 입각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범죄의 발생 원인을 처벌의 여부와 강약에 있다고 보아, 처벌이 있거나 강화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처벌과 통제가 약해지면 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라 주장한다. 억제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탈리아의 베카리아(Beccaria)는 처벌의 확실성(certainty), 엄중성(severity), 신속성(celerity)이 부족하면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처벌의 확실성을 통한 범죄 억제를 강조했다. 범죄 억제는 주로 처벌과 같은 법·제도적 수단이나 수치심과

4) 조준택·전용태(2017).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 247

같은 비공식적 통제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 억제 장치가 제대로 실효성 있는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업범죄가 발생한다. 이는 인간은 고통과 비용을 피하고 쾌락과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공리주의적 전제를 철학적 기반으로 한다.

실제로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억제의 근거로 많이 제시되는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과 '무관용 이론(Zero tolerance theory)'이다. 미국 뉴욕시에서 1990년대 초 범죄와 무질서의 만연으로 '위험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렸으나 '깨진 유리창 이론' 과 '무관용 이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법집행 활동 결과, 범죄 감소와 치안을 확립해 세계경제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는 한편 관광객의 급증 등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원을 얻게 된 바 있다.[5)]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의 잠재적 범죄자들을 가장 강한 처벌 규정인 형법상 간첩죄의 확대 개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려는 위하력으로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방지하려고 하는 점은 '억제이론'상 매우 명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방법론적으로 형법상 간첩죄의 개정이냐 혹은 경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의 제고이냐의 문제는 남는다.

2. 선행 연구 검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과 법적 처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으나 대부분 법적 처벌 강화를 통해 국내 중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신혜(2012)는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낮은 벌금을 부과하는 실정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따른 벌금 등 형사적 제재는 산업기술 유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산업기술유출의 사건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에 비하여 실형의 선고가 소수에 지나지 않고, 형량이 매우 가벼워 예방효과가 미비하며, 법률상의 제도는 사후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 법규는 방지와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신혜 연구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개정 혹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경제 관련

5) 이창무·김민지 공저(2013), 산업보안 이론, 79

법의 개정 중 어느 분야의 법안 개정이 필요한지와 적절한 처벌 형량의 상향정도 등은 밝히지 않았다.

형법상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호정(2009)은 스파이 규제·처벌에 관한 우리의 현행 실정법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간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에서 '외국을 위하여'로 개정하여 냉전체제 종식 후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는 '정보전쟁'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산업스파이 규제·처벌과 관련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외국정부 및 그 정보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안보차원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해서 미국의 「경제간첩법」 수준으로 동법을 개정하거나, 형법상의 스파이 규제·처벌의 범주에 산업스파이도 포함되도록 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호정의 연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상향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형법의 간첩죄를 개정하여 적용대상 확대는 주장하였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느 법률의 개정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형량 강화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이준복(2009)은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으로 해외 M&A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외국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국가 안보 및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제한절차와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의 FINSA를 표본모델로 삼아 자국 내 외국인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외국 인수·합병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를 원칙으로 한 관련 통제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한기준 및 절차 없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국민경제활동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준복의 연구는 경제 관련 법률의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해외 M&A와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법이나 경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처벌대상의 확대와 형량 상향의 필요성을 살펴보되,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은 없는지를 감안하여 보다 적절한 법률개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처벌 법규

현행법상 산업스파이 처벌법규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로서는 「형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상 간첩죄

형법에는 간첩죄를 규정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6], 2016. 9. 6. 이철우의원이 산업스파이를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2016. 9. 6. 발의, 제2163호)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2016. 11)에서 "현행 형법 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간첩)하거나(제98조제1항)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제2항)를 말하는데, 이 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국제법상의 전쟁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전쟁도 포함)을 수행하고 있는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 또는 제102조에 따라 적국으로 간주되는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말하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설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이나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비밀누설죄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이며, 현행 간첩죄는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제정 형법(1953. 9.18.) 규정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냉전체제의 종식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등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 증대되었고, 간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적 안전'으로,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수집을 할 만큼 다원화된 현대의 국제환경에서는 국가의 외적 안전이 반드시 적국에 의해서만 침해받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6)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다가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16. 3.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국내에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였다.[7] 동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8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단,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961.12.30.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8.12.31. 내용이 일부 개정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었다. 2011.12. 2.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동 법도 최근 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였다.[8]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①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14., 2016. 3.29.〉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표 2〉 산업스파이 처벌법규 비교(형법, 산기법, 부경법)

구분	형법 (간첩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성요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처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Ⅳ.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분석

1. 간첩죄 적용대상의 확대

1)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요

2014년 3월 5일 새누리당 이만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9]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한 현행 형법을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며,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환경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이다(안 제9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99조). 참고로 2013년 3월 18일 홍익표의

9)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9619, 발의연월일 : 2014.3.5.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C4A0Z3V0T5Q0J9X5U0H0G3B8A9F1

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10]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형법 신·구 조문 대비표는 <표 3>와 같다.

〈표 3〉 형법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11]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①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98條(間諜)①--------- 간첩한 자는 -- ----- ---- --- --- ------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는 제3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신 설〉	⑤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99條(一般利敵)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 利益을 供與하는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99條(一般利敵)---------- ---------- 적국이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12]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이철우의원 외 11인도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2163, 2016.9.6. 발의, 2016.9.7. 회부,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T3B0V3U1J8J1I1H1Y0V1N3M4B5I8

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T3B0V3U1J8J1I1H1Y0V1N3M4B5I8

12)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며,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환경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99조).

2016.11.22. 상정 및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을 발의하였다. 개정법안의 조문도 동일하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범죄주체를 정한 군형법도 같은 제안이유와 내용으로 발의하였다. 양 법안은 상호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구분과 현행 적용규정, 개정안에 따른 적용규정에 따른 비교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이철우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2016.11.)에 〔표 4〕 외국을 위한 비밀누설행위 규정체계와 개정안 비교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표 4〉 외국을 위한 비밀누설행위 규정체계와 개정안 비교[13)]

행위 구분	현행 적용규정	개정안에 따른 적용규정
적국 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수집·탐지, 군사기밀 누설	형법 제98조제1·2항(간첩) : 사형,무기,7년이상 징역	현행 규정 적용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지령받은자가 국가기밀 수집·탐지, 군사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제4조제2항제2호 : 사형,무기,7년이상 징역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 포함)을 위한 군사기밀 수집·탐지/누설 (단순 군사기밀누설보다 가중처벌)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제12조·제15조 : 15년이하징역/ 1년6월이상 징역	형법 제98조제3·4항 신설 사형,무기,5년이상 징역
(누구에게든) 공무상비밀 누설 외교상 비밀 수집·탐지·누설	형법 제113조·127조 : 2년이하징역,5년이하자격정지 / 5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벌금	비밀·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이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한 경우, 신설 간첩죄 적용가능
외국사용 목적 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6조 : 15년이하 징역, 15억원이하벌금	
외국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8조 : 10년이하징역, 1억원~재산상이득 10배이하벌금	

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U6V0O9M0R6B1P3X5H5F4O4I0D2T6

2)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개정해야하는 이유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개정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먼저,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행 형법은 6·25 전쟁 기간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적국의 개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음(준적국, 형법 제102조)]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한정해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그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 하여 개정 이유를 밝혔다.

둘째, 2014년 10월 12일 민변에서 발표한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논평'을 살펴보면, 기존 형법의 간첩죄에서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로 더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는 '적국'이란 용어는 전시를 상정한 용어가 잔존하는 바, '적국'이란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으로 수정하여 북한만을 예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김호정(2009년)은 우리 형법 및 군형법상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간첩죄는 모두 '적국을 위하여' 또는 '적을 위하여'를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국' 또는 '적'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이거나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전쟁 관계에 있어야 하며, 냉전하의 양극체제가 종식된 현재 상황에서 북한 공산집단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나 단체를 '적국' 또는 '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미국, 일본, 중국의 첩자가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현재 이들 국가는 '적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조항에 의한 처벌 가능성외에 형법 및 군형법과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냉전체제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지만, 우리 현행법상의 간첩죄 조항은 여전히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적국 개념에 잡혀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스파이를 처벌하는 전형적·일반적 법률인 형법 및 군형법상의 간첩죄의 구성요건에서 '적국을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외국 입법례처럼 국가기밀의 누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국가이익에 피해를 가

져올 위험이 있는 한 그 대상이 적국이든 외국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간첩죄의 '적국' 규정을 '외국'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취지는 간첩죄의 처벌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사례 분석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6년 10월 13일, 클린턴 행정부때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여 외국정부와 기업·개인이 자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외국으로 넘겨 피해를 주는 산업스파이에 간첩죄를 적용하여 현재는 15년 징역·벌금 500만불 이하로 개정,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 5〉 미국과 한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규정 비교

구분	미국 : 경제스파이법	한국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 산업스파이죄(국외) 15년 이하 징역, 500만불 이하 벌금 - 영업비밀죄(국내) 10년 이하 징역, 25만불 이하 벌금	- 산업기술 침해(국외) 15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누설(국내) 7년 이하 징역, 7억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취득·사용 또는 누설(국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취득·사용 또는 누설(국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국의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사례와 산업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을 살펴본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처음부터 '적국' 또는 '적'을 위한 의사를 간첩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은 형법편 제37장(간첩과 검열)에 규정된 각종 범죄들은 '외국정부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적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영국의 경우는 1920년 공적비밀법 제2조에서 '외국의 간첩'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어 외국을 위한 간첩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간첩죄' 대신 '배반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타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련의 첩보활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형법도 '외국'을 전제로 한 이적 및 간첩의 죄를 열거하고 있다.[14]

14) 김호정 (2009).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규제법 정비방안. 국가정보연구 제2권 2호. 국가정보학회.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경제관련법을 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의 국외유출을 엄격히 예방·처벌하는 체계로서,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EEA)을 제정하는 한편, 「방첩활동강화법」(Counterintelligence Enhancement Act, 2002),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2007) 등이 있으며,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외국환 관리 및 외국무역법」으로 산업스파이 활동을 처벌하고 있다. 러시아는 「연방보안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안전법」과, 「대외무역법」, 「기술수출입관리조례」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3. 간첩죄 처벌 타당성 분석

최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 안보시기에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를 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를 한다. 다만, 간첩죄의 '적국'규정을 '외국'으로 개정하여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에 편승해 산업스파이 활동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나 하는 문제는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다.

산업스파이의 간첩죄 처벌 찬반 의견으로서 먼저 신중론을 살펴본다. 먼저,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산업스파이와 관련한 처벌강화가 가능하다"며 간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또한 "우리 헌법 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적국을 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 형법을 기반으로 북한을 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적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였다.[15]

다음으로 찬성론을 살펴보면, 먼저, 임중호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교전상태나 적대관계가 없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대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15) 2014. 7. 22. 머니투데이,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072208457643653

산업기밀 등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간첩죄의 상대방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로 확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데 형량 강화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만우의원의 형법개정안 취지에) 동의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도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날로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으며,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주기도 짧아지면서 각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처벌 및 형량 강화에 공감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안이한 기술유출 대응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업보안 시스템이 미비하고,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라 '법적 보호망'이 절실하다고 하였다.[16]

4. 소결 및 제언

변해가는 국제정세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스파이활동의 중요성과 막대한 피해로 말미암은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외국에서는 산업스파이를 형법상 간첩죄로 규정한 사례는 없으며, 경제특별법 형태로 산업기술 유출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경우 '적국을 위하여'를 '외국을 위하여'로 형법을 개정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간첩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법률 개정 시도이며,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서 '산업기술'부분을 특정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산기법의 법제정 취지를 감안해서라도 산기법을 개정하여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철우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2016.11.)에서 "적국이 아닌 외국에 대한 군사비밀·산업비밀·영업비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

16) 2014. 7. 22. 머니투데이,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072208457643653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비밀보호법에서 외국을 위한 경우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외국·외국인 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수집·탐지(간첩) 행위를 현행 간첩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형법 뿐 아니라 국가기밀·군사기밀·산업기밀 등 보호와 관련한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기법이 제정된 취지를 고려한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추가하여 '외국정부나 외국 정보기관' 등을 이롭게 할 의도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상 간첩죄 조항에 준할 만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산업 기술 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형법보다는 산기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와 산업기밀 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 최근의 국제 경제 환경을 감안하여 형법의 '적국'을 '외국이나 외국단체'까지 포함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시상황을 가정한 현행 형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

나,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형법개정안에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간첩죄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많고, 더군다나 법개정이 아닌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의견과 문헌연구를 통한 해외사례연구, 법리적 분석만을 검토해서 연구를 했지만, 향후 연구과제로는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현장의 수사관들이 실제 체감하는 처벌의 강도는 어떠해야 하며, 법제개정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경찰청 (2018). **경찰백서**.

김신혜 (2012).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정 (2009).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규제법 정비방안. **국가정보연구, 2**(2).

이준복 (2009).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창무, 김민지 (2013). **산업보안 이론**. 파주: 법문사.

조준택, 전용태 (2017).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 241-261.

중소기업청 (2013, 5, 20). 중소기업 기술보호 매뉴얼.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자치법규. http://www.law.go.kr/main.html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2014. 3. 5. 새누리당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1C4A0Z3V0T5Q0J9X5U0H0G3B8A9F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2013. 3. 18.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T3B0V3U1J8J1I1H1Y0V1N3M4B5I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2016. 9. 6.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U6V0O9M0R6B1P3X5H5F4O4I0D2T6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센터 소개. http://www.nis.go.kr/ID/1_7_2.do

2014. 10. 12. 뉴스와이어, '민변에서 발표한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논평'.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212&ected=, 검색일 2018. 8. 15.

2014. 7. 22. 머니투데이,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072208457643653, 검색일 2018. 8. 10.

2016. 9. 6. 연합뉴스, 이철우, '산업스파이'도 간첩죄 처벌 가능… 군형법 발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6/0200000000AKR201609061764000

01.HTML, 검색일 2018. 8. 15.

2018. 11. 1. 조선일보, '국정원, 첨단기술 유출 2년간 40건 적발... 70%가 중국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1/2018110100282.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18. 11. 1.

【Abstract】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Kim, Hang-Gon·Lee, Chang-Moo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in point are the enactment of "Economic Espionage Act(1996)" of the U.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of Korea.

Korea is trying to punish industrial spying on the same level as espionage that poses national security threat by revising Crimin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move to toug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pying from "up to 15 years in prison and/or up to 1.5 billion won in fine" to "minimum seven years of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Advanced nations regulate industrial spying with a special act on economy although they have applied espionage act not to "enemy states" but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Likewise, preventing industrial spying by applying espionag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autonomy of industry sector by excessive influence of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enalty of minimum imprisonment of seven years,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with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act under the criminal code is an legal application by stretching of the law, posing a risk of dampening healthy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revising and applying relevant economic laws such as aforementione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Keywords: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Industrial Security, Economic Spy, Economic Espionage Act, Divulgence, Trade Secret, Criminal Code